

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9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춘곤, 김태수,
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유만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환, 임춘대, 정지웅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,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, 학습 성취도의 왜곡,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, 기존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,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 9조(인공지능윤리 지침)에 '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' 항목 추가(안 제9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인공지능윤리 지침)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9조(인공지능윤리 지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수립하여 안내하여야 할 지침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 행정 절차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